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둠.
-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인공지능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 1)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의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3) 인공지능책임관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의장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10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8. 11. ~ 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의 공정성 · 투명성 · 책임성 · 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 · 제도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 · 노동 · 경제 ·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12.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 · 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4. 제조업 · 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5.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인공지능 분야 경제안보 및 기술 보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의 위원

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국가안보실 제3차장

4.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⑤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①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의 의장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0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

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전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은 제10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10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1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6124